

# 그랑시티자이

## 명의변경 안내문

그랑시티자이 계약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댁내 만족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그랑시티자이 1차 분양완료에 이어 그랑시티자이 2차가 5월 분양예정으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당사는 성실시공으로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.

### ■ 전매가능 일시 및 장소

- 일 시 : 2017년 04월 26일(수)부터 월~금요일 (AM 10:00 ~ PM 16:00)  
단, 5월 15일 이후 매주 화·목요일에만 진행될 예정
- 장 소 :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-9 그랑시티자이 건본주택 (단, 공휴일과 토·일요일은 휴무입니다.)
- ※ 문의 : ☎1522-6600      FAX : 031-410-7628

### ■ 전매절차

- ①부부공동명의는 전매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의거하여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, 매주 화·목요일에 진행됩니다.
- ②양도인 및 양수인 상호간 부동산 매매계약서(타인 거래 시) 또는 증여계약서(가족 거래 시) 작성
- ③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수령(안산시 상록구청 민원봉사과)
  - 안산시 상록구청 문의처 : ☎ 031-481-5794
  - ※ 증여시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 받으시면 됩니다.(단, 공동명의로 변경 시에는 지분표시必)
  - ※ 안산시 상록구청 방문 시, 분양계약서 원본 및 매매계약서 혹은 증여계약서, 신분증 지참
- ④중도금 대출 세대 :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승계동의서 작성 및 수령
  -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  
: 군자새마을금고 (☎ 031-494-3600), 신반월새마을금고 (☎ 031-495-1133)  
안산중앙새마을금고(☎ 031-486-0036), 안산서부새마을금고(☎ 031-492-5544) 외 22개 새마을금고
  - ※ 필요서류는 해당 대출은행에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후불이자 세대는 최종 양수인께서 납입하셔야 하오니, 이점에 대해 양도, 양수인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, 대출은행에 문의하시어 상호 정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  - ※ 신용상 문제 등의 사유로 대출승계 불가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.  
특히, 양수인의 중도금 대출 적격여부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양도인께서는 명의변경 시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시고, 심사완료 시까지는 명의변경이 유예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⑤그랑시티자이 건본주택 방문(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작성 및 인감날인)
  - ※ 본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 심사결과에 따라 채무인수가 불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 그랑시티자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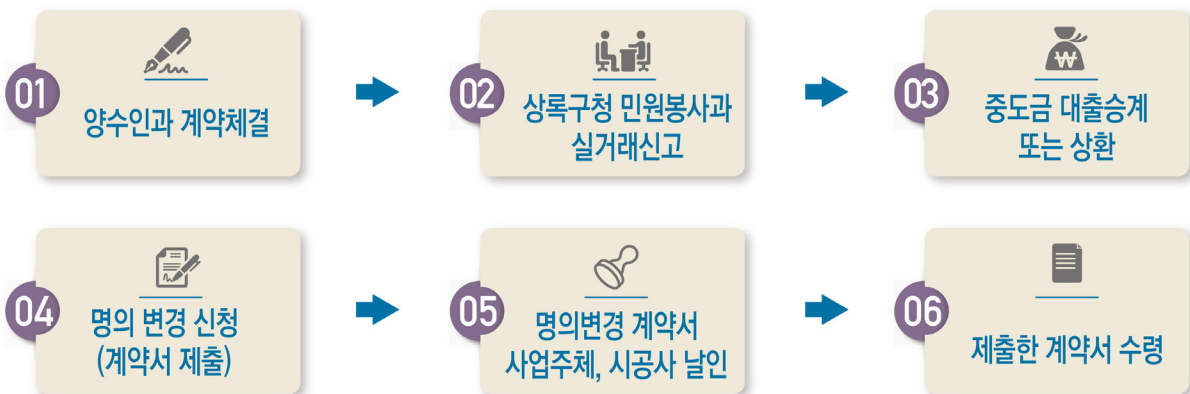
## 명의변경 안내문

### ■ 구비서류

양도인(매도인)	양수인(매수인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동산 매매계약서(원본) 1부</li> <li>•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(원본) 1부 (단, 증여 시 증여계약서 검인 必)</li> <li>• 그랑시티자이 공급계약서 및 별도품목계약서(원본)</li> <li>• 주민등록등본 1통</li> <li>•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(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한 부동산 매도용)</li> <li>• 인감도장 및 신분증(계약자 본인 방문)</li> <li>• 중도금 대출신청 협약서 (중도금 대출세대에 한함/견본주택 비치)</li> </ul> <p>※ 대출세대는 대출승계서 또는 대출금 상환 완납증명서 1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등본 1통</li> <li>• 인감증명서 1통</li> <li>• 인감도장 및 신분증</li> </ul> <p>※ 대리인 추가 구비사항 :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(위임용)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,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</p>

- ※ 부부공동명의로는 주민등록등본 각 1통, 인감증명서 각 1통씩 구비하셔야 합니다.
- ※ 각종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.
- ※ 분양대금의 잔금을 완납하시면 명의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 
(잔금 완납 후에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.)
- ※ 양도소득신고는 매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거래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.
- ※ 명의변경 시 1회당 업무 대행수수료(10만원)가 발생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 
[업무 대행수수료는 대리 금고의 업무대행비(2.5만원)와 취급 금고의 신규 인지세(7.5만원)이며, 이는 업무 추가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이오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]
- ※ 잔금을 분할 납부하시고, 일부 미납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하시는 경우 미납 금액에 따라 사실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이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### ■ 명의변경 절차



※ 중도금 자납 세대는 상기 3번 “중도금 대출승계 또는 상환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